

●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-150호

다음 당사자는 제33조의2(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)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입니다. 당사자의 사업 주소지 및 대표자 거주지의 폐문 부재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22년 05월 12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1. 처분 대상

- 당사자: 주식회사 에이앤에이(대표자: 최*민)
- 주소: 강원도 춘천시 부평길 8, 2층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-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실에 대한 제재부가금 22,497,240원 부과
- * 산출근거: 2016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 총액의 300%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2022. 3. 11. 반환명령하였음

- 관련 근거: 대법원 2021. 3. 26. 선고 2021도1943 판결
- * 간접보조사업명: 2016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(군부대)

4. 법적 근거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

5. 의견제출처

- 기관명(담당부서): 문화체육관광부(문화예술교육과)
-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, 문화예술교육과
- 담당자: 이지원(044-203-2767)
- 팩스번호: 044-203-3477
- 전자우편: ea2yone@korea.kr
- 제출기한: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

<의견제출시 유의사항>

- 가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부에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다. 귀하께서 우리 부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라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